**신주인수계약서**

2017년 12월 일

주식회사 신흥캐피탈

주식회사 덴트웹

**신 주 인 수 계 약**

본 신주인수계약(이하 “본”계약)은 2017년 12월 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주식회사 신흥캐피탈

서울 중구 청파로 450

대표이사 문 현 기

(이하 “갑”이라 한다.)

1. 주식회사 덴트웹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86, 신흥빌딩(방배동)

대표이사 이 현 욱

(이하 “을” 또는 “회사”라 한다.)

1. 이 현 욱
2. 이 신 욱
3. 한 보 경

(상기 이현욱, 이신욱, 한보경을 총칭하여 이하 “기존 주주들”이라 한다.)

**전 문**

갑은 팩토링 업무, 자금지원 및 알선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을은 치과용 보험청구프로그램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을의 주주인 이현욱은 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저작권 등록번호 제 C-2017-017443호 및 제 C-2016-016171호) 및 “상담 동영상”(저작권 등록번호 제 C-2016-019373호) 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을은 이현욱으로부터 상기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 받아 향후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을은 상기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갑에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갑은 을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투자를 함으로써 상기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계약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본 참여를 함에 있어 그 조건 및 방법과 신주 인수 후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주의 발행 및 인수)**

1.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은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액 1,000원) 팔만주(80,000주, 이하 “본건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갑에게 배정하며, 갑은 아래에서 정하는 주식인수일에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한다.
2.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은 주당 만원(\10,000), 합계 금 팔억원(\800,000,000)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2차에 걸쳐 인수하기로 한다.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을이 제공한 2017년 월 일 현재 재무제표와 본 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사항 기타 의무사항에 기초하여 합의된 것임을 확인하며, 위 인수대금은 본 계약 제8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합의한다.
3. 제1차 인수
* 배정 및 인수주식수 : 주
* 주금납입일 : 2017년 월 일
1. 제2차 인수
* 배정 및 인수주식수 : 주
* 주금납입일 : 2017년 월 일
1. 갑이 본건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을의 주주의 구성 및 소유지분은 아래와 같다.

갑 80,000 주 40%

기존주주들 120,000 주 60%

------------------------------------------------

합계 200,000 주 100%

**제3조 (본건 주식 인수의 선행조건)**

1. 갑의 본건 주식 인수는 아래의 사항이 모두 충족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2. 주금납입일에 본 계약에서 정한 신주인수 및 약정사항의 성사를 금지, 제한 기타 방해하거나 또는 이를 불법적인 것으로 되게 하는 어떠한 형태의 법률이나 규정이 발효되지 아니할 것
3.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이사회 결의, 주주 총회 결의 등 내부절차 및 정부당국을 포함한 제3자의 동의, 승인 또는 신청 등의 필요한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획득되었으며, 각 주금납입일 현재 적법하게 발효되고 있을 것
4. **제1차 주금납입일 이전에 본 계약 전문에 기재된 대상 저작권과 관련하여 갑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을과 이현욱이 이용 허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5. 각 주금납입일 현재 본 계약에서 정한 을 및 기존주주들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6. 을은 본건 주식에 대한 제1차 인수 주금납입일의 1주일 전(갑이 달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일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본 계약상 회사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주금납일일 이전에 취하여야 할 제반사항(정관상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증가, 신주발행결의 등)과 관련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8. 회사의 정관 및 제반 규정
9. 회사의 최근일 재무제표 미 당해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황에 대한 명세서
10. 을과 이현욱 사이에 체결된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여 계약서 사본
11. 을의 신임이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2. 본조 1항에 의한 선행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을이 본조2항에 의한 서류교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을이 교부한 서류의 내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갑은 그 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본건 주식의 인수를 연기하거나 본건 주식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을 및 기존주주들의 진술 및 보장)**

1. 을 및 기존주주들은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다.
2. 을은 한국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회사이며, 본 계약체결일 현재 주주명단 및 그 소유주식수는 별지1, 기재와 같다. 또한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는 을 발행 주식이 담보물로 제공되거나 제3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되어 있지 않다.
3.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본건 주식의 발행 및 배정은 여하한 관계 법령이나 정부기관의 관련 규정, 판단, 명령, 금지명령, 훈령 등에 저촉되지 않고, 회사의 정관 및 기타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을이 당사자인 여하한 합의, 보장 기타 계약상 위반을 초래하지 않는다.
4. 을은 그 사업이나 운영 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나 중재 또는 행정 절차가 제소/파기될 위협을 받지 않고 있다.
5. 본 계약의 체결일 및 현재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완전하며, 정확하고 또한 유효한 회사의 정관의 사본이 이미 갑에게 제공되었으며, 주금납입일까지 갑의 동의없이 변경된 바 없다,
6.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 을의 수권자본에 따른 발행예정주식총수는 120,000주이며, 이중 총 120,000주의 보통주식이 발행되었고, 그 주식발행대금이 모두 납입완료되었다, 본 계약체결일 현재 을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정,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의한 사실이 없으며, 기타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제3자의 권리 혹은 이에 상응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7. 갑에게 제공된 년 월 일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는,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회사의 일관된 회계의 기준과 방식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며, 회사가 적용한 회계의 기준과 방식은 한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관련내용(연금, 퇴직금, 및 예측가능한 손실에 대한 적립금 포함)을 공정하고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회사의 부채(보장, 우발부채 포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8. 회사의 의사록이나 회계장부 기타 기록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관계법률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적절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보관되어 왔다.
9. 회사 및 회사의 대리인이 갑에게 제출하거나 공개한 모든 서면으로 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정보는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다.
10. 회사는 모든 중요한 재산이나 자산에 대해 유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재산이나 자산가치에 대해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재산이나 자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담도 지니고 있지 아니하다.
11. 회사는 영업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재고에 대하여 어떠한 부담없이 적법하고 양도가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재고는 어떠한 리베이트나 수수료없이 정상적으로 책정된 가격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매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
12. 회사는 그 재정상태나 기타 영업 등에 대해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관련 법규나 규정, 계약 등의 불이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회사는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영업이나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가능한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잠재적인 조사, 명령 또는 결정은 없다.
13. 회사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회사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적법한 권리자나 사용권자와의 적법한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용권은 현재 유효한 것으로서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회사가 어떠한 사용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를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14.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이나 사용권계약을 침해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제3자도 회사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
15. 회사는 법률상 요구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세금관련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모든 세금, 부담금 기타 공과금(이자와 과징금 등 포함)을 성실히 납부해왔다. 회사는 제3자에 대한 지급금액에 관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왔으며, 원천징수된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
16. 회사는 누구에게도 현재 유효한 어떠한 위임장도 이를 제공한 바가 없다.
17. 회사가 판매한 하자제품 또는 회사가 제공한 용역에 관한 사항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조건 또는 환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8. 본조 1항에 추가하여 이현욱은 갑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다.
19. 이현욱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전적이고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을에 대한 저작권 이용권리 허여를 제외하고는 대상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일체의 권리를 허여한 바가 없다. 또한 대상 저작물을 사용하여 별도의 사업을 하거나 을의 사업과 경쟁이 될 수 사업에 참여한 바가 없다.
20. 대상 저작물은 제3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이나 제3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으며, 제3자가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우려가 없다.

제5조(갑의 진술 및 보장)갑은 을 및 기존주주들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다.

1. 갑은 한국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되는 회사이다.
2. 갑은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가지며, 주금납입일 이전에 갑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관련 내부절차를 완료하였다. 본 계약은 갑에 대하여 적법, 유효하며 갑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고, 이행강제가 가능하다.
3. 본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갑은 정부당국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의 필요한 동의, 인가나 신고, 등록 또는 통지를 받았거나 이행하였다.
4. 본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주식의 인수와 회사 경영 참여는 관련법령, 판결, 가처분, 정부당국의 명령이나 결정 및 갑의 정관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갑이 당사자인 날인증서, 계약, 질권이나 기타 증서상의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갑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연기, 제한, 금지, 기타 방해하거나 불법적으로 만드는 명령 기타 조치가 존재하거나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저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어떠한 소송, 중재 또는 행정소송에 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6조(을 및 기존주주들의 각 주금납입일 이전까지의 의무)

1. 을 및 기존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후 제2차 주금 납입일까지의 사이에 합리적인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정상적인 영업시간에, 갑(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을의 임직원, 대리인 및 회계사와 접촉하고, 회사 자산, 재산, 장부 및 기록과 공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업과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열람, 실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자료의 열람 등은 을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받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을 및 기존주주들은 계약이행일 이전 언제라도 본 계약에서 정한 을 및 기존주주들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허위,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도록 하는 사실이나 상황이 생겼음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통지한다.
3. 을 및 기존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후 제2차 주금납입일까지의 사이에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갑과 사전 합의한다.

**제7조(을의 의무사항)**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을이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가지는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현재 을이 보유하고 있는 주된 사업의 저작권 및 을이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다른 형태로 겸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을은 을의 주식을 증권거래시장(협회중개시장 및 장외시장 포함)에 상장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또는 인수대금의 감액)

1. 본 계약상 을 및/또는 기존 주주들이 그 진술 및 보장 또는 본 계약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존 주주들은 연대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위 진술 및 보장 또는 의무사항의 위반이 없었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치유하거나 혹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이자, 합리적 변호사 보수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을 및/또는 기존 주주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주금납입일 이전에 발견되는 경우, 갑의 선택에 따라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손해액만큼 감액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존 주주들은 위와 같은 치유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지 아니하며 이를 포기한다.
2. 갑은 그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한 경우 을 및/또는 기존 주주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자, 합리적 보수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되 기회상실 또는 일실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외)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의 양도)**

1. 갑 또는 기존주주들이 자기가 소유한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도당사자는 서면으로 이를 다른 주주들(이하 “매수권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매수권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여 해당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며, 우선권 행사를 포기한 매수권자가 있을 경우 당해 매수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나머지 매수권자들이 그 지분에 비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매도당사자의 통지가 있을 경우 당해 주식의 매매가액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매수권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매수권을 포기할 수 있다.
3. 매수권자가 매도당사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십(30)일내에 본조 1항에 의한 매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본조 2항에 의해 매수권을 포기한 경우, 매도 당사자는 아래 기재된 조건하에서, 제3자에게 당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4.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의 영업과 경쟁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갑의 영업과 경쟁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단, 본항은 갑이 매도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3자 매수주식수가 본조 1항에 따라 통보된 것과 동일할 것
7. 제3자에게 제시된 매도 조건(주식매도가격 포함)이 매수권자에게 제시된 조건(평가기관에 의해 결정된 평가가액 포함)보다 유리하지 아니할 것
8. 제3자 양수인이 이 계약의 각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서면으로 매수권자 및 회사에 제출할 것.
9. 갑 또는 기존주주들이 위 제1항 내지 3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해당주식의 매도가격과 1주당 금 만원(10,000)원 중 높은 가액의 상당금을 지급한다.

제12조(상호협력)

1. 당사자들은 관련법 및 각자의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2. 을이 영위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갑이 일정한 제휴 또는 협력관계를 가지려고 할 경우 당사자들은 이에 적극 협력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및 해제 또는 해지)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발효하며, 본 계약 규정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한다.
2. 아래에 기재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기존주주들 포함)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상대방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4.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산, 청산, 파산, 정리, 강제화의 절차가 신청되거나 또는 당좌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제14조(세금 기타 비용)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체결, 이행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에게 발생한 세금 기타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5조(재판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전속적인 제1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6조(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통지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주소변경의 통지가 없는 한 서명날인시 기재한 주소로 송부한다.

제17조(기타)

1. 양도가능성. 본 계약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을 구속하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2. 완전합의. 본 계약은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간의 구두 혹은 서면 합의에 우선하며 이를 대체한다.
3. 변경. 본 계약에 대한 변경, 개정 또는 추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당사자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
4. 불포기.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그 행사를 지연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 포기가 아니며, 이후 동일 또는 여타 권리의 행사나 상대방의 계약상 동일 또는 여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표제, 본 계약상의 표제는 참고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계약의 해석에 사용되지 아니한다.

(이하 여백)

상기 합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서두에 기재된 날에 각자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하다.

주식회사 신흥캐피탈

서울 중구 청파로 450

대표이사 문 현 기

주식회사 덴트웹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86, 신흥빌딩(방배동)

대표이사 이 현 욱

이 현 욱

충북 충주시 연수동산로 26, 연수힐스테이트 102동 1003호

이 신 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81-29, 501호

한 보 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산로 26, 연수힐스테이트 102동 1003호